

2022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모집공고(부문별 재공고)
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충청도내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우수한 기업을 발굴·선정하여 고용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「2022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2년 4월 21일

충청북도지사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2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
- 신청기간 : 2022. 04. 21.(목) ~ 2022. 04. 28.(목)
- 인증기관 : 충청북도
 - 사업주관 :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
- 선정규모 : 4개소 (100~199인 부문 추가모집)

계	20~49인	50~99인	100~199인	200인 이상
20기업	10기업 ^{마감}	5기업 ^{마감}	4기업	1기업 ^{마감}

*** 추가모집 부문**

- 지원내용 : 고용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(인증기간 2년), 근로자 복지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

2

모집요강

○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

가.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 중소기업(본사 또는 주공장)으로서
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

* 본사, 주공장, 제2공장 등 불문하며 사업장 단위 충청북도 내 소재(2년 이상)

나. 상시근로자 100~199명 기업 * 고용보험가입자 기준

< 총 20개 기업, 330백만원 지원 >

구 분	선정 개소수	지원단가 (백만원)	총지원금 (백만원)	신청요건	
				상시근로자 증가율	
				A지역	B지역
계	20		330		
20~49인	10	12	120	3%이상	2%이상
50~99인	5	17	85	3%이상	2%이상
100~199인 (추가모집 부문)	4	23	92	2%이상	1%이상
200인 이상	1	33	33	2%이상	1%이상

※ 대상기간 : '21. 1. 1. ~ '22. 02. 28. / 증가율 소수점 이하는 소수 첫 자리에서 반올림

· 기업규모는 외국인 포함 상시근로자수지만, 근로자 증가율은 외국인 제외한 **내국인**만 해당

· 고용증가율 : { (2022년 2월말 근로자수 - 2021년 1월말 근로자수) / 2021년 1월말 근로자수 } × 100

< 지역에 따른 요건 분리 >

- A지역(기업 다수) : 청주, 충주, 제천, 진천, 음성

- B지역(기업 소수) : 보은, 옥천, 영동, 증평, 괴산, 단양

☞ B지역 신청요건 **완화** 및 지역안배 선정(해당 지역별 기업 1개소 우선 선정)

○ 만료기업 신청

- 2016년 이전 인증 기업(100~199인) 중 기간만료 기업 갱신신청 가능

* 심사 및 경쟁을 거쳐 갱신신청 기업 선정

* 신규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며, 미달된 정원에 한해 갱신신청 기업 간 경쟁

* 갱신 시 기존 인증번호(인증서)는 삭제되며 새로운 인증번호 부여

- 100~199인 기업 외 신청 불가

- 선정 시 지원금 지급 및 인증기간 갱신(2년)

다. 기업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양호한 기업

< 선정 제외대상 기업 >
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임금체불, 환경오염,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
-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에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* 이하인 기업
- 도 인증사업에 선정된(인증 또는 인센티브) 이력이 있는 기업
- 근로자 복리후생 관련 지원사업 참여기업

3 접수방법

○ 접수기간 : 2022. 04. 21.(목) ~ 2022. 04. 28.(목) 18:00 도착분에 한함

※ 마감 이후 신청/접수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필히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접수마감 당일 접속자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, 진흥원 홈페이지 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기한 1일 전 신청서 제출을 권장합니다.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※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접수(서류 스캔)

- 접수처 :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담당자 앞

E-mail : hyunke@kakao.com / Tel : ☎ 043) 230-9763

- 제출파일명 : **업체명.zip** ※ [주식회사 가나다]가 지원할 경우 **압축파일명 예시 : 가나다.ZIP**

○ 유의사항

- 제출서류 전체에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후, 순번에 맞게 PDF 파일로 변환하여 반드시 압축파일(ZIP)로 제출 ※ [참조] 제출서류 목록 및 폴더트리

- 신청 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,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합니다.

- 신청서 제출 후, 반드시 사업 담당자를 통해 접수상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4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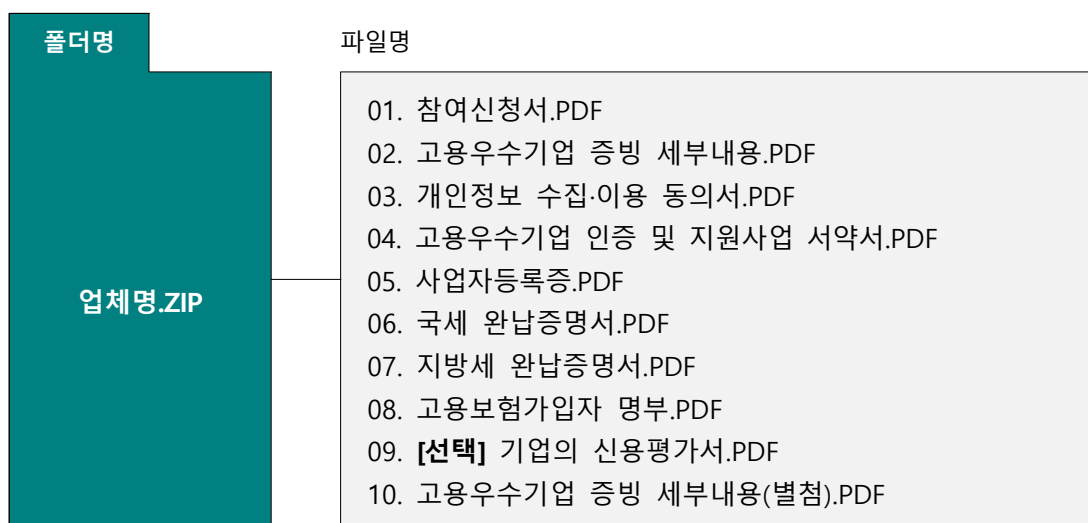
○ 제출서류 목록

구분	제출서류명	부수	발급처	유의사항
필수	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참여신청서	1부	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/신청 (cba.ne.kr)	
필수	[붙임1] 고용우수기업 증빙 세부내용	1부		
필수	[붙임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1부		
필수	[붙임3]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서약서	1부		서약내용 자필작성
필수	사업자등록증(사본)	1부	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	
필수	국세 완납증명서	1부		
필수	지방세 완납증명서	1부		
필수	고용보험가입자 명부	각 1부	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total.kcomwel.or.kr)	21년 1월 말 1부 (21.1.31. 기준) 22년 2월 말 1부 (22.02.28. 기준)
선택	기업의 신용평가서	1부	각 신용평가기관	
필수	고용우수기업 증빙 세부내용 별첨	각 1부		[붙임1] 별첨

※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내용이 **유효하지 않을 경우**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, 추후 **허위·과장**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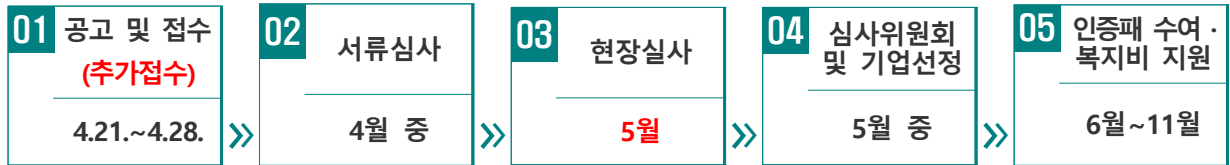
※ 모든 제출서류에 **원본대조필 및 회사 인감 날인 필수**

○ 제출서류 폴더트리



5 선정절차 및 평가

○ 선정절차



○ 평가방법

- 1차 : 서류심사(심사표에 의한 정량평가)
- 2차 : 현지실사(기업복지제도 및 시설확인 등)
- 3차 : 심사위원회 심의 ※ 평가점수 60점 이상(100점 만점) 기업 중 다득점 순 선정

○ 심사기준(100)

- 기업경영 건전성(10),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(10), 일자리 성장성(30),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분야(30), 기타(20)

6 인증 및 지원내용

○ 고용우수기업 인증

- 고용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(인증기간 2년)

○ 고용우수기업 지원내용

- 고용우수 인증기업 인센티브 등 부여 ※ [참조] 고용우수 인증기업 인센티브
- 근로자 복지비 지원 ※ 복지비의 부가가치세 및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
- 지원대상 : 중소·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
- 지원규모 : 20개사 / 330,000천원

(20~49인 이하) 10개 기업	☞ 기업별 12,000천원 지원
(50~99인 이하) 5개 기업	☞ 기업별 17,000천원 지원
(100~199인 이하) 4개 기업	☞ 기업별 23,000천원 지원 (추가모집 부문)
(200인 이상) 1개 기업	☞ 33,000천원 지원

○ 지원항목

지원분야	지원범위	비고
건강관리	· 건강검진, 병의원 진료비,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 건강시설(휘트니스) 이용, 보청기 구입	선택적 복지서비스 전문 업체를 활용한 지원 * 추후 상세내용 통보
자기계발	· 학원 수강료, 시험 응시료, 도서 구입, 세미나 및 교육 참여 등 자율 연수비	
여가활용 (레저·문화)	· 국내 호텔, 콘도, 리조트 등 숙박시설 이용, 항공권, 렌트카 레저시설 이용, 운동화 및 운동기구 등 스포츠 용품 구입 · 영화, 연극, 공연(뮤지컬·콘서트) 관람, 전시회, 박물관, 유적지, 동물원 등 관람	
가족친화	· 취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(학원 불가), 기념일 꽃배달, 효도관광 등 부모 부양	

○ 지원제외 대상예시

- 사행성을 띠거나 불건전한 지출 (보석, 복권, 경마장 마권, 유흥비 등)
-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(상품권, 주유권, 증권 등)
-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보양 음식물 (보약, 영양제, 영양식품 등)
-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행위 (성형, 라식·라섹, 임플란트·치과 보철 등)
- 기타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 (단순 물품 구입, 식사비, 유류비 등)

7 선정 및 인증서 지정 취소

-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: 2022. 4~5월 ※ 현지실사 일정은 임의로 지정
- 선정시기 : 2022. 5월 중
- 결과통지 :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(5월 중)
- 재 교 부
 - 인증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유효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·군을 경유하여 재교부

-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소재지 이전 경우(충북지역에 한함)
-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,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(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)
- 선정 후 인증기업이 신청자격 제외기업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, 인증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(환수)

8 유의사항

- 참여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 사업참여의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나 각종 증명(빙)서의 기재 내용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
- 신청서 접수결과 적격 기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민원야기, 임금체불, 사회적 물의 등 기업운영의 부적격 사항 조회 시 차순위자로 선정함
- 현지실사 일정은 기업의 위치, 신청기업 수에 따라 임의 편성되므로 기업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없음을 유의
- 기업의 사정으로 해당일에 실사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, 평가 항목이 0점 처리되오니 기업에서는 해당일에 실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망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의
(☎043) 230-9763 / hyunke@kakao.com)

【참고】

고용우수 인증기업 인센티브

기 관 명	지 원 내 용	비 고													
충청북도	일자리 정책과	○ 고용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													
		○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지원금													
	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~49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백만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~99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7백만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~199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3백만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인+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3백만원</td> </tr> </table>	20~49인	10기업	12백만원	50~99인	5기업	17백만원	100~199인	4기업	23백만원	200인+	1기업	33백만원	
		20~49인	10기업	12백만원											
	50~99인	5기업	17백만원												
	100~199인	4기업	23백만원												
	200인+	1기업	33백만원												
	○ 지역산업맞춤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 기업 가점 부여														
	경제기업과	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금리우대 0.5% -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													
		○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기업 선발 시 가점 부여 : 10점													
세정담당관	○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- 다만,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외														
국 제 통상과	○ 주요 수출마케팅 사업 및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 신청업체 선발 시 가산점 부여 : 5점														
	<p>※ 수출마케팅 사업 목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무역전시회, 해외무역사절단, 해외충북우수상품전, 충북무역상담회 - 온라인무역상담회, 온라인 해외마케팅 - 해외전시회 개별참가, 무역보험, 해외지사화, 해외시장조사 등 <p>※ 수출기업화 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전략산업박람회 참가, 해외규격인증, 해외광고 - 외국어홍보동영상, 외국어카탈로그, 외국어통번역 -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등 														

기 관 명	지 원 내 용	비 고
한국은행 충북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지원자금(추천기업) - 업체당 지원한도 20억원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) 이내에서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% 해당액을 지원 	
한국무역보험 공사충북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출신용보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증료 할인 : 최대 50% - 한도 우대 : 추가 5~10억원 (상시근로자수 증가 등 감안) ○ 수출보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험료 할인 : 최대 50% - 한도 우대 : 지원한도 최대 1.5배 	
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SA 회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원가입시 입회비 면제 ○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비 면제 및 마크사용료 50% 할인 (1차년도에 한함, 심사비는 할인 제외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※ 대한민국 로하스(LOHAS) 인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비 : 300천원 - 심사비 : 2,000천원(1품목) - 사용료 : 2,000천원~5,000천원 (제품 매출 규모별 1품목 기준)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고경영자 조찬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회원사의 경우 회원사 연회비로 할인 	
충북신용보증재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모형 산출 한도 50% 우대 지원 (1억원 한도) 	
청주상공회의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·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통상 촉진단 참가시 가점 부여 ○ 1:1 기술지도 및 특허사업 우선지원 ○ 바이오기업 풀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시 가점부여 	

【별지】

기업경영 건전성

□ 평가방법
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4조 제1항)에 의거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

□ 평가기준

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	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	③기업신용평가 등급	점수
AAA		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	10
AA ⁺ , AA ^o , AA ⁻	A1	①의 AA ⁺ , AA ^o , AA ⁻ 에 준하는 등급	10
A ⁺ , A ^o , A ⁻	A2 ⁺ , A2 ^o , A2 ⁻	①의 A ⁺ , A ^o , A ⁻ 에 준하는 등급	10
BBB ⁺ , BBB ^o , BBB ⁻	A3 ⁺ , A3 ^o , A3 ⁻	①의 BBB ⁺ , BBB ^o , BBB ⁻ 에 준하는 등급	9
BB ⁺ , BB ^o	B ⁺	①의 BB ⁺ , BB ^o 에 준하는 등급	8
BB ⁻	B ^o	①의 BB ⁻ 에 준하는 등급	7
B ⁺ , B ^o , B ⁻	B ⁻	①의 B ⁺ , B ^o , B ⁻ 에 준하는 등급	6
CCC ⁺ 이하	C이하	①의 CCC ⁺ 이하에 준하는 등급	-
미제출			-

주1) 심사대상 제외 :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(highly speculative) 등급인 경우

-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: CCC+ 이하
-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: C 이하
-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: ①, ②에 준하는 등급

주2)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신용정보업체나 조달청의 신용평가등급 조회(신청기업 전부)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